

채용목표제 운영기준

□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목표비율	▪ 면접전형 선발 예정인원의 45%
적용방법	▪ 면접전형 합격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율이 45%에 미달하는 경우 - 채용 예정 인원의 45%에 도달할 때까지, - 최저 합격점수의 - 5점 범위 내(가점 포함)에 있는 불합격자 중 비수도권 지역 인재 응시자의 차순위자 추가 합격. 단, 과락자는 제외 1) 추가 합격 대상자가 동점자일 경우 모두 추가 합격 2) 전형점수, 미달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